

2026년 제1회 임실군의회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속기) 채용시험 계획 공고

2026년 제1회 임실군의회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속기)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하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6년 6월 26일

임실군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채용기간	근무시간	근무예정부서
속기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명	1년	주 35시간	의회사무과

2. 주요 업무 분야

구분	담당 업무
속기	1. 회의 속기 2. 회의록 작성 및 제작 3. 전자회의록시스템 관리 4. 행정업무 보조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사람(2008. 12. 31. 이전 출생자)
- 주소지, 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사람)
- 응시자격 제한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 자. (생략)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 ⑥ (생략)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 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 ⑥ (생략)

나. 임용 자격요건(직무기술서 참고)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속기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1명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임실군의회 의회사무과

주요 업무	○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속기·기록 지원 ○ 의정 및 의사진행 활동 관련 회의록 작성 ○ 의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속기 지원 ○ 의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에 대한 회의록 제작·배부 및 열람 지원 ○ 임실군의회 누리집 회의록 등재 및 전자회의록시스템 관리
-------	--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 협동정신 ○ (직무 역량)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제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

필요 지식	○ 속기 및 의사진행을 수행할 전문지식 ○ 지방의회 의사진행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 지식
-------	--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에서의 속기 관련 분야 경력을 말함
유의사항	▶ 응시자격 요건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직무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 실무경력은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등)에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 주당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경력이 불분명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주 40시간 미만 근무시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일부 인정함 - 예) 4년간 주 20시간 근무한 경우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4. 근거 법령

-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 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 마.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5.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합할 경우 합격 결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평정요소(5개 항목)

- | | |
|--------------------|----------------|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 평가방법: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하며, 모든 평정요소를 '상', '중', '하'로 평가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불합격 기준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하였을 때
-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 순위로 시험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 일정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일	최종합격자 발표
2026. 7. 2.(목) ~ 7. 6.(월)	2026. 7. 9.(목) 예정 ※면접장소, 일정 등 공지	2026. 7. 13.(월) 예정	2026. 7. 14.(화) 예정

- ※ 면접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일 공고는 임실군의회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 등에 게시하고 합격자 개별 통지함.
-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확정 공고함.
-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인하여 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함. 이 경우 1차 공고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이 인정됨.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응시원서 교부 : 임실군의회 누리집 게시(공고문 첨부 양식 사용)

나. 접수기간 : 2026. 7. 2.(목) ~ 7. 6.(월) / 09:00 ~ 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다. 접 수 처 : 임실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임실군의회 1층)

라. 접수방법 : 방문 접수(대리접수 가능) 및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소인분(빠른 등기)에 한하여 유효하며, 응시수수료는 '임실군 수입증지' 또는 우체국 '통상환증서'를 발급받아 제출서류와 동봉 제출

※ 통상환증서 발급은 우체국 금융업무 마감시간(16:00)에 유의

※ 등기우편 보내실 주소 :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 의회사무과 인사담당자 (우편번호 55927)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마.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 용	비 고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필수)	○ 서식참고	[별지 제1호 서식]
② 응시원서 1부 (필수)	○ 응시수수료: 임실군 수입증지 5,000원 ※ 수입증지 판매장소 : 임실군청 1층 민원실 (해당 증지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인증) ※ 응시수수료 면제: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민법」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은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③ 이력서 1부 (필수)	○ 자격증, 경력 등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것만 기재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별지 제3호 서식]
④ 자기소개서 1부 (필수)	○ A4 2매 이내로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필수)	○ A4 5매 이내로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⑥ 해당분야 관련 경력(재직) 증명서 1부 (해당자)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당해분야의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에 없을 경우 수기로 확인(날인) ○ 상근 또는 비상근 여부를 정확히 기재하고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기재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 함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자체서식
⑦ 해당분야 관련 자격증(또는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	○ 원본 지참 ○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기준	
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필수)	○ 자필 서명 필수	[별지 제7호 서식]

제출서류	내 용	비 고
⑨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필수)	○ 자필 서명 필수	[별지 제8호 서식]
⑩ 주민등록 초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필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포함	[별지 제8호 서식]
⑪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해당자)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경력확인용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누리집에서 출력하거나 공단 방문 발급 ○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증빙 가능한 추가서류 제출	
⑫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인 증명서 1부 (해당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중 해당서류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또는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자격·경력 확인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명서 등)에는 공고일 이전의 서류도 가능함.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이어야 함.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공증필) 첨부

※ 제출서류 확인 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 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상기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임용예정일, 근무기간 및 보수

가. 임용 예정일 : 2026년 7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나.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 근무시간 : 주 35시간(1일 7시간, 주 5일 근무)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보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임기제공무원의 직급별 연봉한계액을 적용하되,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연봉상한액의 60%를 근무시간에 비례한 금액으로 산정

채용분야	채용직급	상한액	연봉액	비고
속기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54,678천원	28,706천원 (54,678천원×60%×35시간/40시간)	

※ 연봉은 경력, 자격 및 직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지급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가능(「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탈락자가 원하여 신청할 경우 반환합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나.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조치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임실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63-640-2733 / 이메일 : narae1205@korea.kr)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임실군의회 누리집(<https://council.imsil.go.kr/>) '고시공고'란에 게재함.